

## 4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영유아담당관 : 최경화 ☎2133-5088 영유아기반팀장 : 김상호 ☎5100 담당 : 조정현 ☎5102  
 저출생정책추진반장 : 주재완 ☎2133-5320 저출생정책팀장 : 홍기영 ☎5321 담당 : 신태철 ☎5332

### □ 총 2건 건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
<p>1.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(영유아담당관, '23.12.13.) → 보건복지부 건의</p>	<p>□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오피스텔 건축기준」 개정(' 23.12.13.)으로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을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음</li> </ul> <p>□ 문 제 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[별표 1. 어린이집의 설치기준]에 의거, 어린이집은 원칙상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1층은 편의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며 조성할 공간도 협소한 상황임</li> </ul>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보육정책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오피스텔에는 1층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</li> </ul> <p>□ 관련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[별표 1]</li> </ul>
<p>2.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개선 (저출생정책추진반, '24.1.26.) → 행정안전부 건의</p>	<p>□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요금 자동 감면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“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” 를 운영 중이며 위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다자녀 가족인지 검증하는 기능 제공</li> </ul> <p>□ 문 제 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정보는 주민등록등본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 등은 다자녀 가족으로 판별 불가</li> </ul>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다자녀 가족도 다자녀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대법원) 연계 등을 통해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개선</li> </ul>